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취약계층이용시설 정의 신설 등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0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취약계층이용시설 정의 신설 및 조항 정비	2
2.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추가	4
3. 취약계층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설비 의무 신설	7
※ 참고자료	12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12
2.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현황('24)	13

I. 제안경위

2026년 4월 24일 김기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취약계층이용시설 정의 신설 및 조항 정비

개정안¹⁾은 현행법 정의 규정에 ‘취약계층이용시설’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u>“취약계층이용시설”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개정안은 김기웅의원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 중 하나로, 나머지는 「노인복지법」(2218601), 「학교보건법」(2218609), 「영유아보육법」(2218602)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음.

현행	개정안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u>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u>취약계층이</u> <u>용시설의 공기질</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정의조항에는 취약계층이용시설에 관한 정의는 없으나, 제5조제2항²⁾, 제12조의2제1항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⁴⁾ 등에서 취약계층이용시설에 대하여 본문에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현행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公器질 유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 **현행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4) **현행법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개정안은 이를 정의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정의조항 신설이 반영되는 경우 이와 관련 추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은 제6조 후단⁵⁾도 있으므로, 법률 개정시 이를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추가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을 추가하여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 10.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 ----- ----- ----- ---. 1. ~ 10. (현행과 같음)

5) **현행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노인요양시설</u>	11. ----- ----- <u>노인요양시설</u>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u>노인여가복지시설</u>
12. ~ 25. (생략)	12. ~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관련 다중이용시설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6)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⁷⁾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⁸⁾,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¹⁰⁾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

6)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이하 생략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8) 현행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9)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70,935개소 중 경로당이 69,260개소로 97.6%를 차지

10)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어 보임.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대부분 소유자나 상시 관리자가 없어 실내 공기질 측정(연1회)·기록보존(10년)·법정교육(3년마다) 의무의 이행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경로당을 제외하고 상근인력이 있는 노인복지관만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므로¹¹⁾,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 소관 부처 및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조율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대부분 소유자·상시관리자가 없어 실내 공기질 관리의무 부과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인천광역시에서는 적용대상 추가 시 지자체 관리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단기·일시 이용 중심 시설에 노인 요양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제31조의3 신설

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①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 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취약계층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설비 의무 신설

개정안은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보존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를 신설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6(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취약계층이용시설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시설,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u>

현행법은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하고(제12조¹²),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취약계층이용시설에 대하여 컨설팅·기술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제12조의2),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제6조¹³)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9조의6은 현행법과 유사하게 소유자등의 측정·기록보존·공개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와 그 비용지원 근거를 함께 규정하려는 것으로, 측정·기록보존은 이미 현행 제12조에 규정되어 있고, 측정결과의 공개 또한 측정결과에 대한 정부 보고·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를 내용으로, 2026년 7월 7일에 공포하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현행법 개정법률(강득구 의원 대표발의)¹⁴에서 명시하고 있

12)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4) -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주요조문: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

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공기정화설비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신규 사항이므로, 개정내용을 반영할 경우, 별도의 조문 신설(제9조의6)보다 현행 관련 조항(제12조·제12조의2)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더 타당해 보임.

공기정화설비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환기설비나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정 설치하여 기준에 맞게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어, 공기정화설비 설치만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는 노인여가복시설 대부분 소유자·상시관리자가 없고 재정적 여력 또한 없으므로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기획예산처는 현행법에 이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42

참고자료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의무

-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매 3년)
 - (측정)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공기질 측정(매 1년)
 - (자료)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보존(10년)
-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시 기록·보존 의무 이행 간주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 먼지 (PM-10) ($\mu\text{g}/\text{m}^3$)	초미세 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 세균 (CFU/ m^3)	일산화 탄소 (ppm)
가. 일반시설 (나·다·라·마군 외 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40 이하				
다. 민감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 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라.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참고자료 2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현황[24]

번호	구분	시설군	개소수	규모 기준 (연면적)
1	가. 일반시설	지하역사	694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72	2,000㎡ 이상
3		철도역사 대합실	31	2,000㎡ 이상
4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27	2,000㎡ 이상
5		항만시설 대합실	6	5,000㎡ 이상
6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19	1,500㎡ 이상
7		도서관	360	3,000㎡ 이상
8		박물관·미술관	289	3,000㎡ 이상
9		대규모점포	1,250	모든 대규모점포
10		장례식장(지하 한정)	213	1,000㎡ 이상
11		영화상영관	587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12		학원	338	1,000㎡ 이상
13		전시시설(육내 한정)	110	2,000㎡ 이상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711	300㎡ 이상
15		목욕장	828	1,000㎡ 이상
		소계	6,535	
16	나. 민감계층 이용시설	의료기관	3,531	2,000㎡ 이상 / 병상 수 100개 이상
17		산후조리원	403	500㎡ 이상
18		노인요양시설	2,363	1,000㎡ 이상
19		어린이집	5,401	430㎡ 이상
20		실내어린이놀이시설	308	430㎡ 이상
		소계	12,006	
21	다.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	7,169	2,000㎡ 이상
22	라. 그 외 기타시설	업무시설	9,435	3,000㎡ 이상
23		두 가지 이상 용도시설	20,145	2,000㎡ 이상
24		실내공연장	48	객석 수 1,000석 이상
25		실내 체육시설	94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26		기타	40	
		소계	29,762	
총계			55,472	